



# 한국기업금융평가원

## 컨설팅 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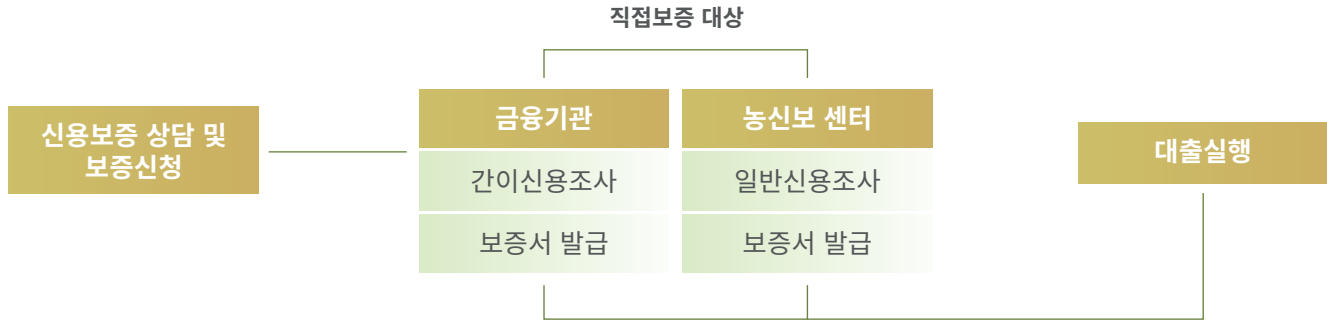


#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

## 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

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농림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기금

### 보증서 발급절차



###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제도의 기능

① 농림수산업자의 신용력 보완

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원활한 자금 유통을 지원합니다.

② 금융기관의 대출회수위험의 해소

금융기관에 대하여 최종적인 담보책임을 농신보가 부담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대출회수위험을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.

③ 경제 정책적 목적 수행

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제도는 농림수산업부문의 정책적 자금이 금융기관을 통하여, 농림수산업자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.

### 대상

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단체, 또는 법인으로서 농림수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누구나 보증이용이 가능합니다.

대상예 : 농업인, 어업인, 임업인, 원양어업자,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, 농림수산단체, 농림수산물유통 및 가공업자, 농림수산물 등의 수출업자, 농림수산물 기자재 제조업자

단, 기금의 보증여력 부족 시에는 일정대상자에 대하여 보증지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
### 보증제한 사유

- 금융기관에서 대출금(상거래채무 포함)을 연체 중이신 분
-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으신 분 (법인 대표자 또는 신용관리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)
- 과거 우리 기금에서 보증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신 분 및 그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신 분
- 우리 기금의 설립 및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하시는 분 또는 사업자금
- 기타 기금이 별도로 정한 보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건전한 농림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림어업인이 필요한 자금을 공평하고 균형있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기금에서는 보증서를 발급 받기 전에 이미 대출을 받으신 경우 그 대출에 대한 보증은 제한하고 있습니다.

### 동일인당 받으실 수 있는 보증한도

개인 및 단체 : 10억원 이내 (신용보증기금,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받으신 금액 포함)

법인 : 15억원 이내 (신용보증기금,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받으신 금액 포함)

### 특별한 경우에 받으실 수 있는 보증한도(예외 보증한도)

동일인당 보증한도 포함 30억원 이내 (신용보증기금,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받으신 금액 포함)

· 민간 RPC, 산지유통센터, 수출 및 규모화사업, 이노비즈 인증업체, 농수산물품모태펀드 투자기업, AI 발생지역 경영안정자금 지원 계열화사업자

동일인당 보증한도 포함 법인 50억원/개인 30억원 이내 (신용보증기금,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받으신 금액 포함)

· FTA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중 이차보전방식 사업자 - 양식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

·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 대상자

· 연구해 노후어선 현대화 사업 대상자(대형선망어업대상자에 한함)

예외보증한도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 기금이 별도로 정한 보증한도와 보증심사방법에 따라 보증서가 발급됩니다.

#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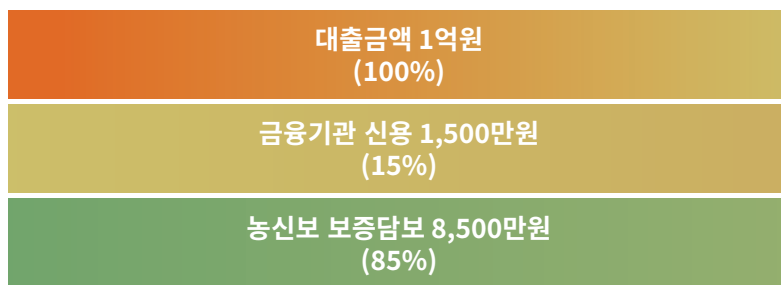
## ■ 부분보증

대출 받으실 금액에 대한 보증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.

1. 보증을 새로 받으시는 경우
  - 농·축협 및 수협, 산림조합에서 보증을 받으시는 농어업인 : 대출금액의 85%
  - 농·축협 및 수협, 산림조합에서 보증을 받으시는 농어업인이외의 분 : 대출금액의 80%
  -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보증을 받으시는 농어업인 : 대출금액의 80%
  -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보증을 받으시는 농어업인이외의 분 : 대출금액의 75%
2. 기존보증을 갱신하시는 경우
  - 대출금액에 대하여 전액 보증된 자금 : 대출금액의 90%
  - 대출금액에 대하여 부분 보증된 자금 : 당초 보증비율

구분				보증비율(%)
신규/갱신	출연기관 (농·축협, 수협)	인격	보증대상자	
신규보증 (증액, 보증심사, 기준변경포함)	출연기관 (농·축협, 수협, 산림조합)	자연인	농어업인	85%
			그 이외의 자	80%
	법인/단체	농어업인	85%	
		그 이외의 자	80%	
	비출연기관 (농수산물유통공사)	자연인	농어업인	80%
			그 이외의 자	75%
법인/단체	농어업인	80%		
	그 이외의 자	75%		
갱신보증	전액보증된 자금			90%
	기 부분보증된 자금			당초보증비율

예시 : 대출금액 1억원, 85% 보증인 경우



$$\begin{aligned} & \text{대출금액 1억원} \\ & = \\ & \text{85백만원(농신보 보증) + 15백만원(금융기관 신용)} \end{aligned}$$

대출이자 는 대출금 1억원에 대하여 납부합니다.  
 보증료 는 농신보 보증 부분인 8,500만원에 대하여 납부합니다.  
 부실발생시 보증부분 8,500만원에 대하여만 보증채무를 이행합니다.